##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75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이종욱·송언석·이인선

박수민 • 박수영 • 신동욱

이종배 • 박성훈 • 최형두

성일종 · 송석준 · 김상훈

김종양 • 구자근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 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제88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
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한 과세특례)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	
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	
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	
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	
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	
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	
라 한다)에 <u>2025년 12월 31일</u> 까	<u>2027년 12월 31일</u>
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	
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